

■ 법률 논단 ■

[금융]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절차

채희석 변호사 | 안수연 인턴/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J.D. Candidate, 2015

1. 들어가며

한국의 경우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질권설정계약의 체결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한 절차로서 주권의 인도(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수도 방법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등록질'을 위해서는 질권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은 주식질권에 대한 법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는 연방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서 정한 주식질권 관련 규정을 그대로 채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약간의 변경만 가하고 있으므로, UCC에서 정한 주식질권 설정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UCC는 주식질권설정을 포함한 담보권 설정을 '담보부 거래(secured transactions)'로 규정하면서 제 9장(Article 9)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포함한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관해서는 UCC 제8장(Article 8)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게 UCC 역시 주식질권 설정절차를 크게 주식질권 설정계약의 체결(Attachment)과 대항력 취득(Perfection)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UCC를 기준으로 주식질권 설정계약의 체결과 대항력 취득을 구분하여 주식질권 설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주식질권 설정계약의 체결(Attachment)

주식질권은 주식질권 설정계약의 체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UCC Article 9-203(a)). 물론 주식질권 설정계약에서 주식질권의 효력발생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주식질권 설정계약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UCC Section 9-203(b)).

우선 주식질권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무의 가치가 명시되어야 하고(UCC Section 9-203(b)(1)), 질권 설정자는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UCC Section 9-203(b)(2)).

또한 주식질권의 유효한 설정을 위해서는 담보물인 주식이 특정되어야 합니다(UCC Section 9-203(b)(3)). 주식질권을 설정하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담보물 특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질권설정자가 담보물인 주식을 특정하고 있는 질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는 방법
- (2) 담보물이 기명식 주권(certificated security in registered form)¹ 경우, 주권이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 (3) 질권자가 담보물로 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통제권(control)을 확보한 경우(통제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와 같이 (1) 피담보채무 가치의 명시, (2) 담보물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 (3) 담보물의 특정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UCC는 주식의 인도방법에 대해서도 주식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UCC Section 8-301(a)). 이에 따르면 우선 주권이 발행된 경우(certificated security) 주식의 인도는 (1) 질권자가

¹ UCC는 증권을 그에 대한 증서가 발행된 증권(certificated security)과 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증권(uncertificated security)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증서가 발행된 증권은 다시 무기명식 증권(소지인식, bearer form)과 기명식 증권(registered form)으로 구분합니다(UCC Section 8-102(a)).

주권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증권중개인(securities intermediary)² 이외의 자가 질권자를 대리하여 주권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이전부터 주권을 점유하던 자가 질권자를 위하여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 (3) 증권중개인이 주권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이 경우 (i) 질권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ii)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가 질권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iii) 질권자에 대한 배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증권중개인에 대한 배서나 무기명배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uncertificated security)에는 (1) 발행인이 질권자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2) 증권중개인 이외의 자가 질권자를 대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이전부터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질권자를 위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대항력 취득(Perfection)

주식질권은 설정계약서의 체결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식질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취득은 주식질권의 우선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선 주권이 발행된 경우(certificated security), 주권의 인도가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대항력 취득 방법입니다(UCC Section 9-313(a)). 주권의 인도에 관해서는 앞서 살펴본 UCC Section 8-301에 따른 인도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권인도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질권자가 담보물인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UCC Section 9-313(d)).

또한 대항력 취득 방법으로 일정한 서식(financing statement 또는 UCC 1)을 국무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UCC Section 9-504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² 증권중개인(securities intermediary)은 증권 청산기관(clearing corporation) 또는 은행이나 브로커를 포함하여 타인을 위해 증권계정(securities account)에 관한 용역제공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아가 질권자가 담보물로 제공되는 주식에 대하여 통제권(control)을 얻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UCC Section 314). 통제력을 얻는 방법은 주식의 유형에 따라 서로 구분됩니다(UCC Section 8-106).

-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중 무기명식 주식(certificated security in bearer form) : 질권자에게 주권이 인도된 경우
- (2) 주권이 발행된 경우 중 기명식 주식(certificated security in registered form) : 주권이 (i) 질권자를 피배서인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유효하게 배서되거나 (ii) 질권자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 (3)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uncertificated security) : 당해 주식이 (i) 질권자에게 인도되거나 (ii) 발행인이 주주명부상 소유자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 질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경우

아울러 주식질권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통제권을 얻은 질권자는 통제권을 얻지 못한 질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UCC Section 9-328(1)). 또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중 기명식 주식에 있어서 인도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통제권을 얻지 못한 질권자는 통제권을 얻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한 질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질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집니다(UCC Section 9-328(5)).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우리 상법에 따른 주식질권 설정절차와 유사하나,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의 발생에 따라 주식질권을 실행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데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